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사 회 보 장 기 본 법 시 행 규 칙
제 정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권덕철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제정이유

사회보장기본법 개정(법률 제18215호, 2021. 6. 8. 공포, 2021. 12. 9. 시행)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의 심의·조정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안전하게 구축·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·운영 근거(법 제43조)가 마련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(안 제1조 및 제2조)

- 1)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는 보안시설 및 전산장비를 갖춘 장소에 설치·운영
- 2)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주요 기능
- 3)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자료제공 범위 및 이용승인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심의위원회 운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- 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1. 7. . ~ . .)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
- 규제 없음

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안

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사회보장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)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(이하 “행정데이터 분석센터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는 출입통제 등의 보안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갖춘 별도의 장소에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·조정 및 연구 등을 위한 행정데이터의 보관·관리 및 데이터 간 연계·분석
2.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이용자를 위한 자료제공 및 분석 지원
3. 그 밖에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활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자료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 및 이용 승인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718